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시 운영 책임자인 대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부적격자에 의한 검사와 검사원 추락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도록 하여 검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지정검사기관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31조제1호 개정)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기준에 대표자(이사장 등)가 책임검사인력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이상)을 갖추도록 기준을 추가하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1년 이상)을 취득한 후 책임검사인력 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4년간은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을 적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 중 “단체일 것”을 “단체로서 그 대표자가 별표 7에 따른 책임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대표자로서의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경과조치) ① 제31조제1호의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지정검사기관의 대표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반검사인력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자격을 보유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책임검사인력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 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 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u>단체일 것</u>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 ----- ----- -----. 1. ----- ----- -- <u>단체로서 그 대표자가 별 표 7에 따른 책임검사인력 이 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대표자 로서의 재임기간이 6개월 이 상일 것</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연 락 처	(044) 205-4291